





보건복지부			보도참고자료						
배 포 일			2020. 3. 25. / (총 5매)						
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	과	장	진	영	주	전	화	044-202-2710	
	담 당	자	김	도	균		잣	044-202-2706	
국민건강 보험공단	부	장	이	영	우	전	화	033-736-2504	
	팀	장	김	진	희	<u> 1</u>		033-736-2566	

#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한다!

-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(3.25~4.1) -
- 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「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(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)」을 마련하고,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.
  - 이번 개정안은 **코로나19** 관련 **민생경제 지원**을 위한 **추가 경정예산**으로 **건강보험료 지원(국비 2,656억 원)**이 확정(3.17일) 됨에 따라 **신속한 집행**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.
    - \* (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)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조 6,675억 원 확정
  -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하위 20%와 특별재난지역(대구 및 경북경산·청도·봉화)에 거주하는하위 50%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%를 3개월 간(3월~5월) 지원할 계획이다.
    - \*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하여 지원









### < 경감 대상자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 >

-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
  -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 이하
-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
  -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
  -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 50 이하
- 경감 대상 보험료 및 경감률
  - 경감 대상 보험료는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보험료이며, 경감률은 100분의 50
-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**전국의 835만 명\***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 지역 거주자(세대)는 월평균 41,207원, 그 외 지역 거주자(세대)는 월평균 31,306원의 보험료가 감소\*\*될 것으로 기대된다.
  - \* 직장가입자 602만 명(피부양자 포함), 지역가입자 233만 명(세대원 포함)
- \*\* (사례)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: 기존 월 82,414원 → 지원 후 월 41,207원 납부 그 외 전국 거주자 : 기존 월 62,612원 → 지원 후 월 31,306원 납부
-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,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.







- □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**보건복지부 누리집**(www.mohw.go.kr)  $\rightarrow$  정보  $\rightarrow$  법령  $\rightarrow$  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
  -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0년 4월 1일까지**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### ── < 의견 제출방법(우편) > -

### ○ 제출처

- 주소 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4층,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

- FAX : (044) 202 - 3933

### ○ 기재사항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의견)
- 성명(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< 붙임 > 주요 질의응답











### 붙임

### 주요 질의응답

# Q1.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른 경감(이하 추경 경감)이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는지?

예,3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.
추경 경감의 경감기간은 '20.3월~5월까지 3개월입니다.
이에 따라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보험료의 경감액은
4월에 소급 정산되어 반영될 예정입니다.

## Q2. 특별재난지역의 직장가입자인데 4월 6일에 퇴사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예, 추경 경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적용됩니다.
3~5월에 매월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
자격이 변동되어도 해당 월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
계속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Q3.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추경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?

○ 예, 추경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추경 경감은 기존 경감들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.

### 04. 추경 경감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금에도 적용되나요?

○ 예,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분에도 적용됩니다.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 하므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면 사업주의 부담분도 같이 경감됩니다.









### 05.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?

○ 예,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(본사)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받습니다.

# Q6. 특별재난지역 직장가입자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3월부터 질병 휴직을 했습니다. 복직할 경우 휴직 기간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?

○ 예, 3~5월에 추경 경감 대상 조건에 해당하였다면 경감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Q7. 추경 경감 대상자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?

○ 대상자는 보험료가 아래 금액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, 이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이며, 평균 보험료이기 때문에 개인별 실제 감소액은 차이가 있습니다.

< 월 보험료 경감액 >

구 분	일반 지역(특별	결재난지역 외)	특별재난지역		
- 구 분 -	지역가입자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직장가입자	
평균 경감액	6,410원	54,490원	23,070원	80,640원	
최고 경감액	6,990원	58,360원	29,860원	86,920원	



